

서울지방법원

2000. 12. 26. 판결선고	인
2000. 12. 26. 원본영수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0나1640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1
 서울 마포구

 2. A2
 서울 양천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준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

변 론 종 결 2000. 11. 28.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 26. 선고 98가소102221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 A1에게 266,785원, 원고 A2에게 515,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 6.부터 2000.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1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1에게 485,195원, 원고 A2에게 992,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① 원고 A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1의 청구를 기각하며, ② 원고 A2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게 515,9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 6.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2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A1이 대교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면서 1998. 8. 26.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

입한 손○○으로부터 차량수리의뢰를 받아 경기 37마1565호 아반테 승용차를 별지 수리내역서 1의 작업항목 및 구분항 기재와 같이 수리한 사실, 원고 A2가 오토바디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면서 1998. 7. 23.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유○○로부터 차량수리의뢰를 받아 서울 2도4694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별지 수리내역서 2의 작업항목 및 구분항 기재와 같이 수리한 사실, 손○○, 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각 양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원고 A1은 시간당 정비공임을 16,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위 아반테 승용차의 수리비가 905,650원인데 그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20,455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보험금 485,195원의 지급을, 원고 A2는 시간당 정비공임을 16,175원으로 하여 계산한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수리비가 992,390원이므로 그 지급을 각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아반테 승용차와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할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비요금은 '정비연합회가 정한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바{위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2호는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정비연합회가 아닌 개별사업자가 정비요금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경영과 경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비연합회가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한다)'로 개정되었다}, 갑 제8, 11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연합회는 1997. 12. 22. 총회를 열고 1997. 12. 30.부터 적용될 시간당 정비공임은 16,175원

으로 정하고 표준작업시간은 그때까지의 작업시간보다 12.4% 하향조정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하향조정된 작업시간은 위 아반테 승용차의 경우는 별지 수리내역서 1의 작업시간항 기재와 같고,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경우는 별지 수리내역서 2의 수리비항의 작업시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① 원고 A1에게 위 각 작업시간항에 시간당 정비공임 16,000원(원고 A1은 정비연합회가 정한 16,175원의 범위 내에서 16,000원으로 시간당 정비공임을 정하여 청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을 곱하여 계산된 별지 수리내역서 1의 수리비항 기재 금액인 687,240원을, ② 원고 A2에게 위 각 작업시간항에 시간당 정비공임 16,175원을 곱하여 계산된 별지 수리내역서 2의 수리비항 기재 금액인 728,73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 A1은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420,45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1에게 266,785원(=687,240원-420,455원), 원고 A2에게 728,73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업자들이 보험회사에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정비연합회가 정한 시간당 정비공임과 작업시간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당 정비공임과 작업시간은 적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수리비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쟁하는바, 위 연합회가 정한 시간당 정비공임과 작업시간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A2와는 시간당 정비공임을 판금작업은 10,130원으로, 탈,부

착 작업은 11,15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정비요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는바,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A2와 피고가 1997. 8월 초순경(원고 A2는 1997. 7월말 내지 1997. 8월초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경우도 달라지지 않는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시간당 정비공임을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2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 수리가 위 약정기간 내인 1998. 7. 23. 행하여진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2은, 위 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재항변하는바,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2가 1998. 7. 9.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2의 위 해지에 따라 위 약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998. 8월초 이후가 될 것이므로 위 해지의 효과는 1998. 7. 23.에 이루어진 위 수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위 약정이 1997. 7월말에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2와 피고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A2의 1998. 7. 9.자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은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1999. 8월 초순경까지 유효하게 되어, 위 수리는 위 약정의 적용을 받는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1998. 7. 23. 행하여진 원고 A2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수리에 관하여는 위 약정에 의하여 그 수리비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 A2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 A2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수리비를 계산하면 별지 수리내역서 2의 약정수리비항과 같이 507,367원이다(도장요금에 관하여는, 갑 제8,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연합회는 1997. 12. 30.부터 도장요금을 12% 인상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2는 이러한 인상된 도장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A2가 1997. 7. 23.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할 당시는 위와 같이 인상되기 전의 도장요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도장요금을 계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1에게 266,785원, 원고 A2에게 507,3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1. 6.부터 피고가 항쟁함에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0. 12.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다만 원고 A2에 대하여는 피고가 515,900원 및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따른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1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2. 26.

재판장 판사 목영준 _____

 판사 윤치삼 _____

 판사 김상규 _____

수리내역서 1(원고 A1)

시간당 정비요금 16,000원

순번	작업항목	구분	작업시간	수리비(원)
1	리어범퍼	교환	1.3	20,800
2	리어범퍼	O/H	2.0	32,000
3	콤비램프(LH)	탈착	0.5	8,000
4	콤비램프(RH)	교환	0.5	8,000
5	리어휠다(RH)	교환	8.2	131,200
6	트렁크리드	교환	1.4	22,400
7	트렁크리드 록크	탈착	0.4	6,400
8	트렁크내장(R/L)	탈착	1.08	17,280
9	팩키지트림	탈착	0.5	8,000
10	리어시트&등받이	탈착	0.81	12,960
11	소음기	탈착	1.2	19,200
12	리어휠하우스(RH)	판금	1.0	16,000
13	트렁크힌지	교정	0.5	8,000
14	리어도어(RH)	판금	1.5	24,000
15	리어필라(RH)	판금	0.5	8,000
16	리어범퍼(교환)	도장		58,000
17	트렁크리드(교환)	도장		100,000
18	리어도어(RH) (보수)	도장		87,000
19	리어휠다(RH) (교환)	도장		100,000
합계				687,240

수리내역서 2(원고 A2)

순번	작업항목	구분	수리비(작업시간x 정비공임:16,175원)		약정수리비(작업시간 x탈,부착작업:11,150 원,판금작업:10,130원)	
			작업시간	금액	작업시간	금액
1	프론트범퍼	탈착	1.2	19,410	1.2	13,380
2	안개등	탈착	0.72	11,646	0.72	8,028
3	헤드램프(L/R)	탈착	1.2	19,410	1.2	13,380
4	시그널(L/R)	탈착	0.4	6,470	0.4	4,460
5	트랜스버스필러	탈착	0.6	9,705	0.6	6,690
6	프론트휠다(LH)	교환	1.6	25,880	1.6	17,840
7	휠가아드(LH)	교환	0.5	8,087	0.5	5,575
8	프론트도어(LH)	O/H	2.15	34,776	2.15	23,972
9	리어도어(LH)	O/H	2.15	34,776	2.15	23,972
10	프론트도어(LH)	판금	2.0	32,350	2.0	20,260
11	리어도어(LH)	판금	3.0	48,525	3.0	30,390
12	프론트판넬	판금	1.0	16,175	1.0	10,130
13	프론트휠하우스(LH)	판금	1.0	16,175	1.0	10,130
14	리어휠다판넬(LH)	판금	2.0	32,350	2.0	20,260
15	프론트범퍼(보수)	도장		58,000		41,400
16	프론트휠다(교환)	도장		81,000		58,600
17	프론트도어(보수)	도장		87,000		66,300
18	리어도어 (보수)	도장		87,000		66,300
19	리어휠다 (교환)	도장		100,000		66,300
합계				728,735		507,367